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15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xi.co.kr/ss	대표번호 1833-4478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분양일정, 청약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민영	해당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기타지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규제지역 여부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없음	전매제한 없음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없음 /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15.(금)	2024.11.25.(월)	2024.11.26.(화)	2024.11.27.(수)	2024.12.03.(화)	2024.12.05.(목) ~ 2024.12.09.(월)	2024.12.15.(일) ~ 2024.12.17.(화)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예치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ss)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총축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축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총축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총축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청약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O	O	O	O	O	O
APT :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 후 재공급 (계약취소주택)	O	O	X	X	X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1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25.(월)	2024.11.26.(화)	2024.11.27.(수)	2024.12.03.(화)	2024.12.05.(목) ~ 2024.12.09.(월)	2024.12.15.(일) ~ 2024.12.17.(화)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견본주택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 청약홈	-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견본주택 현장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자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주택과 - 18452호(2024.1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8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39층, 8개동, 총 1,104세대 중 일반분양 8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435세대 [기관추천 : 87세대, 다자녀가구 : 87세대, 신혼부부 : 158세대, 생애최초 : 79세대, 노부모부양자 : 24세대 포함]

입주예정시기 : 2028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계
2024 000642	01	084.9467A	84A	84.9467	31.6440	116.5907	51.4433	168.0340	47.2930	364	36	36	65	33	10	180	184	10
	02	084.9448B	84B	84.9448	31.6549	116.5997	51.4422	168.0419	47.2920	258	25	25	46	23	7	126	132	3
	03	084.9480C	84C	84.9480	32.5720	117.5200	51.4440	168.9640	47.2938	261	26	26	47	23	7	129	132	2
합계										883	87	87	158	79	24	435	448	1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약식 표기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2	2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2	6
	10년 이상 복무군인	2	2	2	6
	장애인	10	7	7	24
	중소기업 근로자	20	12	13	45
	소계	36	25	26	8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	25	26	87
신혼부부 특별공급		65	46	47	158
생애최초 특별공급		33	23	23	79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0	7	7	24
합계		180	126	129	4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토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 시	2025-01-20	2025-05-15	2025-10-15	2026-03-16	2026-10-15	2027-03-15	2027-09-20		
84A	2층	10	125,601,526	416,398,474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3층	2	125,601,526	421,398,474	547,000,000	10,000,000	4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4층	11	125,601,526	426,398,474	552,000,000	10,000,000	4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5층	3	125,601,526	431,398,474	557,000,000	10,000,000	4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67,100,000
	6-10층	53	125,601,526	436,398,474	562,000,000	10,000,000	4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11-20층	109	125,601,526	441,398,474	567,000,000	10,000,000	4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21-30층	110	125,601,526	446,398,474	572,000,000	10,000,000	4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31층 이상	66	125,601,526	450,398,474	576,000,000	10,000,000	4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72,800,000
84B	2층	3	125,598,717	422,401,283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3층	5	125,598,717	427,401,283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4층	4	125,598,717	432,401,283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5층	5	125,598,717	437,401,283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6-10층	37	125,598,717	442,401,283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11-20층	74	125,598,717	447,401,283	573,000,000	10,000,000	4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21-30층	76	125,598,717	452,401,283	578,000,000	10,000,000	4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31층 이상	54	125,598,717	455,401,283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84C	2층	2	125,603,448	412,396,552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3층	8	125,603,448	417,396,552	543,000,000	10,000,000	4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4층	1	125,603,448	422,396,552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5층	9	125,603,448	427,396,552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6-10층	36	125,603,448	432,396,55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11-20층	75	125,603,448	437,396,552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1-30층	78	125,603,448	442,396,552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31층 이상	52	125,603,448	446,396,552	572,000,000	10,000,000	4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본 아파트는 총 1,104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금회 883세대 분양합니다. 잔여세대는 향후 인허가청과 협의 이후 공급방식 및 공급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체제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보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분양대금	231-910051-94604	KEB 하나은행	교보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231-910051-93004	KEB 하나은행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231-910052-17504	KEB 하나은행	GS건설(주)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5-05-15	입주지정기간
84A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84B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84C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거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 ※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 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5-05-15	입주지정기간	
84A	인테리어 Style up	• 복도 및 거실 벽면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 시트패널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특화조명 • 단천장 및 리니어 조명 • 욕실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벽, 바닥, 욕조측면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주방 Style up	• 루버천장 •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 독립형 후드 •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식탁 특화조명 • 터치리스 주방수전(Kohler) • 특화주방가구 (플랩 상부장, 유럽산 하드웨어) • 팬트리 • 홀바 • 대면형 주방	13,500,000	1,350,000	1,350,000	10,800,000
	현관 중문 (3연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침실3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특화 욕실 수전 및 도기(Paffoni), 무광 액세서리 및 샤워부스 프레임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가족욕실 / 부부욕실 복합환풍기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LG 인덕션 3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84B	인테리어 Style up	• 복도 및 거실 벽면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 시트패널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특화조명 • 단천장 및 리니어 조명 • 욕실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벽, 바닥, 욕조측면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주방 Style up	• 루버천장 •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 독립형 후드 •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식탁 특화조명 • 터치리스 주방수전(Kohler) • 특화주방가구 (플랩 상부장, 유럽산 하드웨어) • 팬트리 • 홀바 • 대면형 주방	13,500,000	1,350,000	1,350,000	10,800,000
	현관 중문 (3연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침실3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특화 욕실 수전 및 도기(Paffoni), 무광 액세서리 및 샤워부스 프레임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가족욕실 / 부부욕실 복합환풍기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침실1(안방) 더블 드레스룸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LG 인덕션 3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84C	인테리어 Style up	• 복도 및 거실 벽면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 시트패널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특화조명 • 단천장 및 리니어 조명 • 욕실 이탈리아산 포셀린타일 벽, 바닥, 욕조측면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주방 Style up	•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 독립형 후드 • 식탁 특화조명 • 터치리스 주방수전(Kohler) • 특화주방가구 (플랩 상부장, 유럽산 하드웨어)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현관 중문 (3연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특화 욕실 수전 및 도기(Paffoni), 무광 액세서리 및 샤워부스 프레임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가족욕실 / 부부욕실 복합환풍기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LG 인덕션 3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가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품목 및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추가 가전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LG전자 Premium UVnano 실내기) ※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주방 Style up 미계약 시	2 대	거실 + 침실1(안방)	4,140,000	
	4 대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7,570,000	
주방 Style up 계약 시	3 대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5,710,000	주방 냉방 효율 UP
	5 대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8,97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 가전선택품목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선택안		설치장소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공급금액	공급업체
시스클라인	2대	선택1	거실 + 주방	-	1,82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2	거실 + 침실1(안방)		1,820,000	
	3대	선택3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2,660,000	
		5대	선택4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시스클라인 + LG 프리미엄 환기	2대	선택1	거실 + 주방	1대	3,120,000	
		선택2	거실 + 침실1(안방)		3,120,000	
	3대	선택3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3,960,000	
		5대	선택4		거실 + 주방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G프리미엄 환기(전열교환기)는 시스클라인 환기 연동 전용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LG프리미엄 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공급금액은 기본 제품 전열교환기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LG프리미엄 환기 미선택 시 기본 제품 전열교환기가 시공됩니다.

추가 가전선택품목 (주방가전) ※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제조사
오브제 냉장고	BC4S1AA1 + BC3K1AA1	5,800,000	냉장, 냉동 + 김치	LG전자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 포함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가구 부착형 (14인용)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유상옵선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선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선)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계약기간은 추후 통보예정이며, 지정된 계약기간 내 미계약 시 무상옵선 선택사항은 아래와 같이 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장 : 선택형1 (고객설치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상기 유상옵선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선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선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IV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태아 및 입양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신청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7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건보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기준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이며,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건분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15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분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거주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합니다.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합니다.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합니다.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합니다.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거주지역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 수

⑤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순위 판단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1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구분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15%) / 우선공급 (35%)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신생아 일반공급 (5%) / 일반공급 (15%)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7,004,510 ~ 9,806,313	8,248,468 ~ 11,547,854	8,775,072 ~ 12,285,099	9,563,283 ~ 13,388,595	10,351,494 ~ 14,492,090	11,139,705 ~ 15,595,586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8,405,412 ~ 11,207,214	9,898,161 ~ 13,197,547	10,530,086 ~ 14,040,114	11,475,939 ~ 15,301,251	12,421,793 ~ 16,562,389	13,367,646 ~ 17,823,526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 ~	11,547,855 ~	12,285,100 ~	13,388,596 ~	14,492,091 ~	15,595,58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	14,040,115 ~	15,301,252 ~	16,562,390 ~	17,823,527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세무서(홈택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 행정복지센터 ② 축산업 허가증 / ☎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가능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추가서류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족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거주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거주지역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7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 ④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미혼인 자녀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으며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거주지역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1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구분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15%) / 우선공급(5%)	130% 이하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신생아 일반공급(35%) / 일반공급(15%)	130% 초과 ~ 160% 이하	9,105,863 ~ 11,207,214	10,723,008 ~ 13,197,547	11,407,593 ~ 14,040,114	12,432,268 ~ 15,301,251	13,456,942 ~ 16,562,389	14,481,616 ~ 17,823,526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13,197,548 ~ 14,040,115	14,040,115 ~ 15,301,252	15,301,252 ~ 16,562,390	16,562,390 ~ 17,823,527
	1인가구	160% 이하	~ 11,207,214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13,197,548 ~ 14,040,115	14,040,115 ~ 15,301,252	15,301,252 ~ 16,562,390	16,562,390 ~ 17,823,527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세무서(홈택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사항 및 발급처
공통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 [세무서(홈택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명 [세무서(홈택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청약 당해연도를 포함 과거 5개 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 행정복지센터 ② 축산업 허가증 / ☑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추가서류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종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일반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추첨]

- ① 거주지역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84A/B/C	40%	60%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세대주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및 해외에 체류 중(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당첨사실 확인서	직계존속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영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안내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인감증명 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본인서명 확인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확인방식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확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03.(화) ~ 2024.12.1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2.0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일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일정/장소 변경 시 SMS, 홈페이지를 통한 재안내 예정)	계약기간
제출기한	2024.12.05.(목) ~ 2024.12.09.(월)	2024.12.15.(일) ~ 2024.12.17.(화)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추첨/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제출장소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비자발급내역 및 재해증명서 등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해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VIII

참고사항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정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자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기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시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쟁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해질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자재 목록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내란, 전쟁,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클럽, GX룸,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스쿨버스존, 주민운동시설 2개소,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내진능력 (MMI등급)	Ⅶ - 0.210g
--------------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평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G-SEED-2024-0963-5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인증등급: 우수(건안인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72호)

한국부동산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관안 성성자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X아이비스

3.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자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공사

4. 성능등급: 가. 생활환경 종합

구분	성능등급	구분	성능등급
1. 생활환경 종합	가	16. 일조량 확보	가
2. 에너지 효율	가	17. 열역학 효율	가
3. 실내 환경 쾌적성	가	18. 열역학 효율	가
4. 쾌적성	가	19. 열역학 효율	가
5. 쾌적성	가	20. 열역학 효율	가
6. 쾌적성	가	21. 열역학 효율	가
7. 쾌적성	가	22. 열역학 효율	가
8. 쾌적성	가	23. 열역학 효율	가
9. 쾌적성	가	24. 열역학 효율	가
10. 쾌적성	가	25. 열역학 효율	가
11. 쾌적성	가	26. 열역학 효율	가
12. 쾌적성	가	27. 열역학 효율	가
13. 쾌적성	가	28. 열역학 효율	가
14. 쾌적성	가	29. 열역학 효율	가
15. 쾌적성	가	30. 열역학 효율	가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24-주-에너지-0120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인증등급: 1등급

한국부동산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11600호	351,584,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택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택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택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스(이하 '시행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식회사 제이비스”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식회사 제이비스”임을 “계약자”는 인지한다.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식회사 제이비스”가 부담한다.
 3. “주식회사 제이비스”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식회사 제이비스(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상 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이수기술단(주)	(주)제이알씨엠
금 액	3,485,865,900	854,202,298	863,100,000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교보자산신탁(주)	주식회사 제이비스	지에스건설(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11, 201호 (마곡동, 마곡파인스퀘어Ⅲ)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6188373	110111-0002694

VIII 유의사항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 편의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0월 사업승인변경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기일이 2024년 4월 25일로 소빙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여건 반영, 구조 성능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풍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기타 도시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일자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공사는 천안성성8 도시개발구역 내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천안성성8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전체사용검사는 불가하며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등 시공과 다를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빙 사용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천안성성8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준공 전 본 단지의 입주 및 주변 지역의 사업지연 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본 단지(성성자이 레이크파크)의 대지권(토지)등기는 천안성성8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일부 미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서측에 번영로가 접하고, 단지 북측, 남측 및 동측에 2~4차선 도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비율 등은 향후 지적확정결과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번영로에는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또는 방음벽)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용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정유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 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조성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성성호수공원, 산업단지, 공장, 목장 등이 인접하여 소음, 분진, 냄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 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진행 중에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감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천안시·군·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병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천안(시)청이 지정 또는 위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감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천안(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성성8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초등학교는 학교설립(가칭 업성2초등학교)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시기와 입주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 임시배치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임시배치기간 동안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 당 사업지에 따른 유입 중학생은 천안서북북학군에 배치할 예정이나 추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발전기용 급배기 D.A 및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웃집을 사다라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7동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배치됨에 따라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 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보행자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발,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 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장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등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영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간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초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 디자인 /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 디자인 / 마감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파고라 내 인터넷 필요 시 무선 LTE 모듈로 설치될 예정이며,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계 후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 보전, 수질관리,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에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안테나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4동, 101동 옥상층 및 각동 D.A 인근 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상층 : 101동, 102동, 104동 2. 지하2층 : Pit 3개소(101동, 104동, 106동) 3. 지상15층 : EPS/TPS 2개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107동, 108동), EPS/TPS 1개소(105동)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차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데크의 높이는 조경 식재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데크에 의한 파라펫의 높이가 변경되어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는 설치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뒷밭 조성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베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 부착물이나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에 표현된 특화옥상장식물은 예시로 표현된 것으로 본공사 시 시공안전 및 구조설계 여건에 따라 서로 분할되어 구간별 이격 시공될 수 있으며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등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조정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대형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의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p>외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체제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되어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계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은 추후 의미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야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사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도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CLUB XIAN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부와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인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전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크린스톤 내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조정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정용 고사 및 조정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CLUB XIAN은 지하 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서비스 등은 향후 입주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업체 사정으로 인해 상품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주인 부대복리시설인 교보문고 등은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인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서에서는 계약 시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는 도서관 제공되며, 큐레이션 서비스는 최초 2년 동안 운영 예정으로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며, 이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체제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되어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계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은 추후 의미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야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사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도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CLUB XIAN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부와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인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전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크린스톤 내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조정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정용 고사 및 조정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CLUB XIAN은 지하 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서비스 등은 향후 입주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업체 사정으로 인해 상품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주인 부대복리시설인 교보문고 등은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인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서에서는 계약 시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는 도서관 제공되며, 큐레이션 서비스는 최초 2년 동안 운영 예정으로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며, 이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통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제연팬,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유상 전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공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이 적용되는 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세대 조합에 따라 이용 시 대기 시간이 각 동별로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정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461대, 근린생활시설 7대, 총 1,468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상상 지하주차장의 주차 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차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정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461대, 근린생활시설 7대, 총 1,468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상상 지하주차장의 주차 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차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린생활 시설	• 전자차 충전시스템은 총 급속 15개, 완속 58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이며, 지하 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치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101동, 102동, 107동, 108동은 모든 층에서 주동 승강기가 정착하며, 103, 104, 105, 106동은 지하2층 및 지상층에만 주동 승강기가 정착하고 지하1층에서는 정착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주차대수는 주동 위치에 따라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상 및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의 경우 지하1층에 주동 승강기가 정착하지 않으므로, 지하 1층 주차장 또는 커뮤니티시설 이용 시 외부 보행로를 통하여 이동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소는 104동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 조광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로,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
•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획에 따라 통로등인이 추가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에어컨 실외기/탈취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차폐 계획에 따라 난간 또는 파라펫의 형상/재질/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침실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화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간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체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축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동일 공급타입일지라도 전용면적(기본형 실 내부 면적 및 발코니 초과면적)과 서비스면적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출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림, 천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일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증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화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화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화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을 부차 및 내용물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패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식공법 적용 시 수전, 도기 등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일마감 등)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적정 습도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재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핸들, 레일, 조경,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에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창호, 시트 패들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체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체 특성 상 조영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열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환풍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 별 사양(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 옵션 등에 따라 타일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용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유상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천장,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적용된 레이아웃과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규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계 / 설비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시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하이브리드 전기 쿨탑 기본 적용으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쿨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 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스마트) 내부에 세대 급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급탕분배기는 세대 보일러 하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및 주출입구 부근에 부대시설 실외기 및 사후나 보일러 연도가 설치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가동은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 공사를 감안하여 상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기 하부에 온냉수 공급을 위한 분배기 박스가 설치됩니다.	
• LG전자 프리미엄 환기 옵션 선택 시 통합제어가 아닌 별도 전용 리모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장된 센서로 운전되고, 기본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 됩니다.	
• LG전자 프리미엄 환기 옵션 선택 시 주방 환기와 연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 센서 부착으로 인해 월패드와 유선리모컨에 표기된 센서와는 수치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e-모델하우스 단위세대 조명은 보여주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모니터 등 출력장치의 설정값에 따라 색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모델하우스의 외부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e-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아이টে็ม은 화가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현장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87-3번지 일원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
	분양문의	1833-4478
	공식 홈페이지	http://xi.co.kr/ss